

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

**참여전,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9 우수벤처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채용박람회

특 / 성 / 화 / 고 / 전 / 문 / 인 / 력 / 만 / 을 / 위 / 한 / 대 / 표 / 채 / 용 / 박 / 람 / 회

2019 우수 벤처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채용박람회

10.29.(화) 10:00~16:30
신도림 테크노마트 11층 그랜드볼룸





현장 면접 참여
우수 벤처기업
45개사



취업준비 완성
사전 클리닉 지원



취업 따라잡기
VR면접 체험 등

www.job-festival.co.kr

채용박람회 운영사무국
Tel : 070-4181-4937 / Fax : 032-323-0315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KOVA (사) 벤처기업협회  구로구 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대학교총동맹자장

일시	2019년 10월 29일(화) 10:00~16:30		
장소	신도림테크노마트 11층 그랜드볼룸 (신도림역)		
참가대상	특성화고생(기능인재)		
행사구성	현장면접 및 기타 부대행사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벤처기업협회, 구로구		
기업신청기간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개인신청기간	행사당일 참석
문의처	02-6331-7052	FAX	02-6331-7112
담당자		E-MAIL	hsy@kova.or.kr
사이트(출처)	http://www.guro.go.kr/www/ntc/NR_list.do		

*자료출처 : http://www.guro.go.kr/www/ntc/NR_list.do

□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즐거운 관광 행복한 일자리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10.29.(화)~30.(수) / 2일간 COEX Hall C1, 2



일시	2019년 10월 29일(화)~30일(수) 10:00~17:00		
장소	서울 삼성동 COEX 1층 Hall C 1,2		
참가대상	박람회 관심있는 누구나		
행사구성	현장면접 및 기타 부대행사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기업신청기간	박람회 사무국문의	개인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전접수외 기타
문의처	02-2186-9295	FAX	02-567-5450
담당자		E-MAIL	tourjobfair@incruit.com
사이트(출처)	http://www.tourjobfair.com/fair/intro		

*자료출처 : <http://www.tourjobfair.com/fair/intro>

□ 강소 & 콘텐츠기업 채용박람회

I-SEOUL-U 서울시 일자리 카페 ☕

강소 & 콘텐츠기업 채용박람회

2019년 10월 31일(목) 10~17시

강소 & 콘텐츠 기업 채용 박람회(채용 면접/채용 상담)

◎ 서울시 강소 11개 기업, 콘텐츠 분야 7개 기업이
참여하여 채용면접 및 상담 진행

일정 10월 31일(목) 10:00 ~ 17:00
*서울시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이력서 클리닉 신청가능 (10/21~29일 까지)

현직자 잡콘서트 및 취업 프로그램

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핀란드편 페트리 칼리올라
일정 13:00 ~ 14:00 글로벌 시대 커리어개발의 해법

② 취업분야 스타강사 출간찬
일정 15:00 ~ 15:50 강소기업의 채용특성 및 준비 전략

③ 채널A 도시아부 신재호 PD
일정 16:00 ~ 16:50 강소 콘텐츠기업 현직자 잡콘서트

부대 행사 및 상품 증정

◎ 면접 메이크업 / 이력서 사진촬영 / 취업 날개(취업면접 정장)
◎ 취업타로 / 캘리그라피(응원 메시지 액자)
*무료 커피 & 쿠키 제공 및 기념품 & 이벤트 상품 증정

일정 10월 31일(목) 13:00 ~ 17:00

일 정

2019. 10. 31 (목)
10-17시

장 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문 의

02) 760 8814
카톡 중인 '서울시일자리카페'

후 원 | 콘텐츠일자리센터
Content Job Hub Center

일시	2019년 10/31(목) 10:00~17:00 (7시간)		
장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참가대상	박람회 관심있는 누구나		
행사구성	채용 박람회, 현직자 잡콘서트 및 유명강사 취업 프로그램, 부대 행사 및 상품증정		
주최	서울시		
주관	서울시 일자리카페		
기업신청기간	서울시일자리카페	개인신청기간	프로그램신청 및 기타
문의처	02-760-8814	FAX	--
담당자		E-MAIL	@
사이트(출처)	http://job.seoul.go.kr/www/custmr_cntr/ntce/WwwNotice.do?method=getWwwNotice-iceCmmnSeNo=1&fileyn=Y&bscttSn=13231		

*자료출처 :

http://job.seoul.go.kr/www/custmr_cntr/ntce/WwwNotice.do?method=getWwwNotice-iceCmmnSeNo=1&fileyn=Y&bscttSn=13231

□ 2019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2019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 스타트업 취업 토크콘서트 · 스타트업 부스 운영 · 채용 설명회 · 이벤트 · 네트워킹 파티

2019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1시 - 6시

네트워킹 파티
오후 6시 - 8시

장소
팁스타운 S1, 지하1층 팁스홀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9)

- 스타트업 취업 토크콘서트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스타트업 현황, 다양한 직종에서 바라보는 스타트업, 스타트업에서의 복지 등 다양한 스타트업에서의 일, 삶, 비전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

누구나 참석가능
- 스타트업 채용부스

총 50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채용상담 및 홍보 부스 운영

사전예약 추천! 현장 등록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습니다
- 투자 상담부스

투자자와 기업들을 1:1 매칭하여 투자 상담회 진행

사전 상담회 참가(입장가능)
- 채용 설명회

스타트업 채용 담당자가 직접 회사에 대해 소개하고 채용 정보에 대한 안내를 진행

누구나 참석가능
- 스튜디오

이력서에 부족한 증명사진 무료 촬영

누구나 참석가능
- 오피스존

구직자들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출력할 수 있는 공간

누구나 참석가능
- 직업심리검사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합한 진로분야를 선택할 기회

누구나 참석가능
- 이력서·자기소개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면!

업이펙트 이벤트 / 누구나 참석 가능
- 퍼스널 컬러 진단

면진을 대비하여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진단받고 싶다면!

누구나 참석가능
- 이벤트존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등록 이벤트 및 현장 이벤트 선을 배로차

누구나 참석가능

일시	2019년 10월 31일(목), 오후 1시~6시 (네트워킹 파티 : 오후 6시 - 8시 반)		
장소	팁스타운 S1 지하1층 팁스홀(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참가대상	누구나 참석가능		
행사구성	채용상담처 기타 부대행사		
주최	강남구, 한국엔젠투자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강남구, 한국엔젠투자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신청기간	박람회 사무국문의	개인신청기간	사전예약 및 기타 (홈페이지참조)
문의처	02-3440-7400	FAX	--
담당자		E-MAIL	@
사이트(출처)	http://startup.kban.or.kr/bbs/content.php?co_id=a1		

*자료출처 : http://startup.kban.or.kr/bbs/content.php?co_id=a1

□ 2019 리딩코리아 잡 페스티벌



일시	2019.11.04(월)		
장소	삼성동 코엑스 Hall B1		
참가대상	행사참여 및 구직 희망자		
행사구성	기업별 일자리 홍보 및 구직자 채용상담, 구인기업 - 구직자 1:1 매칭, 참가기업 채용설명회, 취업 특강, 각종 취업컨설팅 등 부대행사 및 이벤트 진행, 유공자 포상식 진행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한국산업기술평가지원센터		
기업신청기간	2019.09.25 까지 (박람회사무국문의)	개인신청기간	2019.11.03 까지(사전접수)
문의처	02-6365-7007	FAX	--
담당자		E-MAIL	leading@keddisco.com
사이트(출처)	http://leadingkorea.kr		

*자료출처 : <http://leadingkorea.kr>

□ 2019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2019 정보보호 취업박람회(2차)

일시 2019. 11. 4 (월), 10:00~17:00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B1)

행사구성

기업별 부스	정보보호 유관기업, 일반 IT 기업 등 일대일 상담 및 현장 면접 진행
정보보호 희망 멘토링	정보보호 분야(컨설팅, 보안관제, 개발, 기술지원, 물리보안) 원직 종사자와의 직무멘토링
정보보호 프로젝트 발표회	구직대상자의 성과발표회 개최로 채용 연계 지원
부대행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NCS기반 적성검사, 면접 이미지메이킹컨설팅, 직업상담, 이력서 사진촬영
이벤트	세션 방문 이벤트, 경품 응모 등

행사문의 2019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운영사무국
 T 02.2142.0914
 M edu4security@kisia.or.kr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주관 | KISI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일시	2019.11.4(월)10:00 ~ 17:00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		
참가대상	정보보호 박람회 관심있는 누구나		
행사구성	현장면접 및 기타 부대행사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기업신청기간	박람회 사무국문의	개인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전접수 및 기타
문의처	02-2142-0914	FAX	--
담당자		E-MAIL	@
사이트(출처)	http://kisiajob.com/program		

*자료출처 : <http://kisiajob.com/program>

□ 2019 산업별 일자리박람회



일시	19. 11. 5(화), 10:00 - 17:00		
장소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E, Lobby		
참가대상	ISC별 구인기업 / 구직자 및 재학생		
행사구성	현장면접 및 기타 부대행사		
주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기업신청기간	박람회 사무국 문의	개인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전등록 및 기타
문의처	--	FAX	--
담당자		E-MAIL	@
사이트(출처)	http://iscjobfair.com		

*자료출처 : <http://iscjobfair.com>

□ 2019 의료기기인의 날

2019 — 의료기기 채용박람회 및 R.A.P —

의료기기인의 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11.5.Tue. 10:30~17:00
밀레니엄서울힐튼 Grand Ballroom

2019년 의료기기 채용박람회

대상 의료기기 분야 관심있는 구직자 및 재직자

주요내용

- 기업관: 채용상담 및 현장면접 33개소
- 부대행사: 1:1 멘토링, 1:1 이력서 작성 기법 및 완성품, 면접비지침 등
- 1:1 멘토링은 경보희 총재(이지스온 사장)의 참여 가능
- 특강관: 인사담당자를 사로잡는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 노하우

참여방법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nids.or.kr) 참여 신청

접수기간 2019.10.16(수) ~ 11.01(금)

문의 교육기획팀 02-860-4352-4354

예매 IBK기업은행에서 예매나 지원

2019년 의료기기 R.A.P

대상 의료기기 R.A. 분야 관심있는 자료
필요한 홈페이지 사진 신청자만 참여가능

주요내용

- 국가공인 의료기기 RA 자격시험 역사문제 공개 및 출제 경향 안내
- 20년 RA 전문가 양성 사업 및 자격증 활성화 방안 소개
- 국내 의료기기 GMP 확산 고시 개정사항 안내
- 유럽의료기기규정(MDR) 주요 변경사항 안내

참여방법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nids.or.kr) 참여 신청

접수기간 2019.10.16(수) ~ 11.01(금)

문의 자격검정팀 02-860-4372-4374

주최 | NIDS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주관 | KIDP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ICOX 서울지역본부 후원 | IBK기업은행

일시	2019. 11. 05(화) 10:30 ~ 17:00		
장소	밀레니엄서울힐튼		
참가대상	의료기기 산업 분야 구직 희망자		
행사구성	현장면접 및 기타 부대행사		
주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주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기업신청기간	박람회 사무국문의	개인신청기간	행사당일 참석
문의처	02-860-4352	FAX	--
담당자		E-MAIL	tpfk6654@nids.or.kr
사이트(출처)	http://www.nids.or.kr		

*자료출처 : <http://www.nids.or.kr>

□ 2019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취업박람회



행사명	2019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취업박람회
일시	2019. 11. 12(화) 10:00 ~ 17:00
장소	aT센터 제1전시장 오시는길
대상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
주최	에럴드경제 KRX 한국거래소 KOSDAQ 코스닥협회
주관	에럴드경제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후원	고용노동부

*자료출처 : <http://www.kosdaqjobfair.co.kr/herald.php?hd=info.summary>

□ 2019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대전



일시	2019년 11월12(화)~11월13(수) 10:00~17:00		
장소	잠실 롯데호텔월드(크리스탈볼룸)		
참가대상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행사구성	취업박람회, 취업컨설팅,		
주최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코트라		
기업신청기간	박람회사무국문의	개인신청기간	글로벌일자리대전 홈페이지참조
문의처	02-3460-7397	FAX	--
담당자		E-MAIL	@
사이트(출처)	http://cafe.naver.com/kotrajobinfo		

*자료출처 : <http://cafe.naver.com/kotrajobinfo>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손을 맞잡는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10월 21일(월)부터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올해 1월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는 직제개정을 통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며,
- 최근, 실무협의체 운영과 의견교류를 통해 10월 21일(월)부터 ‘취업상담 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하여 확대하기로 했다.
 - 즉, 국가보훈처가 취업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을 선별하여 추천하면, 고용노동부는 추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토록 하거나 ‘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 특히 ‘취업상담 프로그램’*은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본인에게 맞는 직업종류 등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상이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원하는 직업과 그에 필요한 역량과의 격차를 줄이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 * 취업상담 프로그램 : 직업선택, 구직기술 습득,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한 프로그램
- ** 취업성공패키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장 1년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1단계) 진단·의욕 제고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2단계) 직업능력 증진 훈련 프로그램 참여 →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아울러,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취업 희망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협력하여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알선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김성준 사무관(☎044-202-73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장애인고용법, 퇴직급여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파견법 시행령

- 정부는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장애인고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 개선>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 '근로자' 정의(제2조제5호) 규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 제외
○ 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인사 관리상 차별대우 금지(제5조), 자금용자(제18조) 등

-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설립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총 255억 원 규모(2018년 기준)

-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퇴직급여제도의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제한>

- 원칙적으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다.
 - 그러나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가 함부로 사용됨에 따라 노후소득 재원의 마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그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연 2.5%)로 융자(근로복지공단 수행)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 규정>

- 2019년 4월 30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2019년 11월 1일 시행)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시행령에서 사업의 유형·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고려하여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 * 구체적인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서 명시할 예정
(재정지원일자리사업, 100억 원 이상 SOC 사업 등)
 -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를 통해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하여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

- 또한 고용정보시스템(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유식별번호·민감 정보(건강, 범죄 경력)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정보, 사회적기업 관련 정보, 장애인 고용·직업관련 정보, 건설근로자 관련 정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인적자원사업 관련 정보
-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우리사주 환매수 대상 비상장법인 규모 직접 규정>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근로자가 취득 시 다시 쉽게 되팔 수 있도록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를 도입·시행(근로복지기본법, 2017년 6월)하고 있으며

* 비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환금성 보장을 위해 비상장법인의 근로자(우리사주조합원)들이 취득한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한 요건 하에 회사가 되사주는 제도

○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규모*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제2조제1항제4호)을 인용하여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종업원 수(일용 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파견근로자 제외)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 그러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인용조문 내용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 하도록 개정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알기쉬운 법령을 위한 규정 개정>

-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됨에 따라
- 법상 용어,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체계 정리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보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유리 사무관(☎044-202-7068), 장애인고용과(장애인고용법) 남성욱 사무관(☎044-202-7482), 고용정책총괄과(고용정책기본법) 김정탁 사무관(☎044-202-7215), 퇴직연금복지과(근로복지기본법, 퇴직급여법) 민광제, 이강욱 사무관(☎044-202-7557, 7559), 고용차별개선과(파견법) 김민규 사무관(☎044-202-75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장애인 고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제외 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60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인사노무상 차별금지 등이 적용되도록 개선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공포 후 6개월
퇴직급여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의 남용으로 노후 소득재원이 마를 우려가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만 가능하도록 제한 ○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 재정검증 방법을 개선 ○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집인 업무 범위를 확대 	공포 후 6개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유형·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선정 ○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유식별번호·민감 정보(건강, 범죄 경력)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 ○ 고용정책심의회를 전문위원회로서 지역고용전문위원회 및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신설, 근로복지전문위원회 폐지 	2019. 11.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문(제2조제1항제4호)을 인용하여 적용하였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규모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직접 조문화 	공포한 날
파견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됨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상 용어,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체계 정리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날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개 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기업은 2년 500만원 또는 3년 75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 (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 (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총 4개소]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주)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02-2006-9583)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02-3399-7651)
인크루트알바콜(주)서울북부지사(02-2186-9059)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02-6959-5570)

2019 기업지원제도 안내

1. 일자리안정자금

-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월보수액 21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5인미만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구 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지원대상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예외로 지원) ①공동주택 경비·청소,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활동지원기관자활기업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②300인 미만 사업장 55세 이상 고령자 ③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 지원제외: ①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②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③국가 및 공공기관,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자(어린이집 등), ⑤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⑥안정자금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퇴직시킨 사업자
지원가능 근로자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일·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 월10만원 이하의 식대·경조사금액·자녀보육수당, 단순노무직이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240만원 한도) • 고용보험 가입 및 1개월 이상 고용유지(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 • 월평균보수 최저임금 이상, 기존근로자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제외: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5만원 지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8년 계속 지원 사업장 ⇒ 최저임금 준수확인서 제출(별도 신규신청 절차 없음) * 일반사업장은 '19.2.28까지, 공동주택은 '19.1.31까지 제출 ② '19년도 최초로 신청한 사업장 ⇒ 연 1회 신청('19.1.1~12.13)으로 연간 자동 지급 • 고용보험 기성립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안정자금 신청 체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고용보험 신규성립 :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안정자금 신청 체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두루누리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두루누리 사업장용) ☞ 근로자 추가 신고: (입사)취득신고서에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퇴사)상실신고내역 자동 반영
신청방법 ·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신청)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 (오프라인신청)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방문·우편·팩스 • (지급방법)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지급시기) 월 1회 지급(매월 15일)
신청문의	<p style="text-align: center;">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p>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꼭 알아야 할 사항!



01.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부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02. 누가 혜택을 받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임수가 20만원 미만인 근로자(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고충분담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사업자 : 의무사항을 갖춘 소기업(소기업·중소기업)이 있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비영업사업자(근로자)와 비영업사업자(사업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사업 : 신규지원지역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2024년 4월 1일 이후 지원

03. 어떻게 지원받나요?

사업주가 운영하는 국내외 모든 사업에서 해당 월별 고용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입하면 그 다음 달 월별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뺐 내야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Tip

내 일터의 사회보험 부담이 부담이 없게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지원센터에서 기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기업사업장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고용·신체보험료 부담 신고센터
 * 국민복지지원 홈페이지 (www.ficmwf.or.kr)
- 국민연금 기업지원·신고센터
 * 국민연금지원 홈페이지 (www.nps.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어떻게 받으세요?



01. 신청방법

온라인 : 국민사회보험료지원센터(www.ficmwf.or.kr) 신청사항 입력

서면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행정수첩주소 등)

02. 제출서류

신규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
 - 임의가입사실서 제출(신고세외보험제외대상고충)

기존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03. 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하여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콜 센터 156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15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연건보 부담' 일자의 한정자금을 신청하세요.

2024 지원 고용사업주에게
 월평균임수 20만원 이하 근로자 1명당
 월4000원(연48000원) 지원(사업장은 140000원 이상)

- 1. 연건보 4대 사회보험료는 2024.10.1부터 2024.12.31까지
- 1. 서면 : 국민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고충신청
- 1. 전화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68-0075)

급여항목 **일자리 안정자금** 을 검색해보세요.

3. 기업지원 사업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 * 주요지원내용 붙임 참고

1	고용창출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심사형, 요건형), ②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심사형), ③국내복귀 기업 지원(심사형), ④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심사형), ⑤고용촉진장려금지원, ⑥청년추가고용장려금
2	고용안정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정규직 전환지원(심사형), ②시간선택제 전환지원, ③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심사형), ④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고용유지지원금, ②무급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4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②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중복지원 사업 대상

양 장려금	중복 시	지원 비율
일자리 함께하기 (100% 지급)	고용창출장려금	+ 70% 추가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100% 추가지원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2-2171~1800~5, 1833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8층)

●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 검색

○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고창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형)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 40만원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3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40만원, 1~3년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기업규모 관계없이 월 6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10만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	·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고안 장려금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주당 5~1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기업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월30만원(대규모기업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
고유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사항 별도 문의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지원사항 별도 문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3년간 임금을 지원
장년· 고령자 고용 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지원수준]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27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대규모 기업 10%) 한도,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18년도 24만원)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18개월 이상 근무한 만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지원수준] 근로자: 감액금액의 1/2, 연간 1,080만원 한도(최대 2년), 사업주: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최대 2년)